

제13권 15호

2023. 7. 17~2023. 7. 30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가상자산입법의 제도적 의의와 과제 |
| 이슈분석 | 日 3대 금융그룹의 글로벌 전략 변화 및 시사점 |
| 금융경영브리프 |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속화
아시아 대형 금융사, 인도네시아 금융 비즈니스 확장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물가 둔화세 뚜렷해지며 긴축 경계감 완화
외 환 : 연준 긴축 마무리 기대 속 약달러 재개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김중현(jh.kim_)

논단

교수 정순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분석

연구위원 백종호(jongho.baek)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신석영(seokyoung.shin)
연구원 송영은(hesong)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 01 | 논단 | 가상자산입법의 제도적 의의와 과제 |
| 06 | 이슈분석 | 日 3대 금융그룹의 글로벌 전략 변화 및 시사점 |
| 10 | 금융경영브리프 |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속화
아시아 대형 금융사, 인도네시아 금융 비즈니스 확장 |
| 14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물가 둔화세 뚜렷해지며 긴축 경계감 완화
외 환 : 연준 긴축 마무리 기대 속 약달러 재개 |
| 18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가상자산입법의 제도적 의의와 과제*

정 순 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랜 논의 끝에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 체계적 완결성은 부족하지만, 그 제도적 의의는 첫째, 분산원장기술의 입법적 승인, 둘째, CBDC의 가능성과 가상자산법과의 차별화, 셋째, 가상자산을 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요하는 대상으로의 승인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2단계 입법으로서 발행인의 자격과 발행공시,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는 엄격한 발행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긍정과 부정의 경계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상자산법)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을 재산신고대상으로 포함한 ‘공직자윤리법’에 이어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는 세 번째이다. 가상자산법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후 그 제도적 의의와 과제를 정리한다.

∴ 가상자산법의 적용범위

가상자산법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적용범위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역외적용,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첫째,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하여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은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상자산법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2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를 명시한 것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사실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것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이례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만일 제도화한다면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지급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가상자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

가상자산법은 오랜 논쟁의 산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적 승인으로서 의의

가상자산법은 지급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급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지급수단에 대하여 투기적 거래를 허용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역외적용은
블록체인
본질을 반영한
것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서
의미를 가질 것

둘째, 가상자산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3조). 국경이 규제상 경계로서의 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블록체인 환경에서 가상자산법의 역외적용은 불가피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이다. 가상자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①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②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③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①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위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외국 가상자산이용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주로 문제될 것이다.

가상자산이라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셋째,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4조).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인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법의 시행에 맞추어 토큰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보호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제도설계가
필요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보관, 보험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9조). 고객자산보호 문제는 가상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증권과 파생상품, 지급수단 등 모든 금융거래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어느 정도 제도정비가 이루어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불충전금에 대하여도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예치금과 가상자산으로 나누어 제도설계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이슈

가상자산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의 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7조, 제19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정보의 범위, 내부자의 범위, 공개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첫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라고 하면서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미공개중요정보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적용대상인 내부자의 정의도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정의(174조)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정보’ (174조)이지만 가상자산법상 중요정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 라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는 원칙적으로 기업정보이지만, 가상자산법상 미공개중요정보는 기업정보에 한정되지 않는 ‘상품정보’ 이다.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의 기업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시장정보가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가상자산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단이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단’ 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정보는 가상자산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행하는 자’ 를 정의하는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이 가상자산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가 같을 수 없으며 당연히 내부자의 범위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가상자산법의 내부자 정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였을 뿐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회사관계형모델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보의 범위(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와 내부자의 범위(상장법인과 그 내부자 및 정보접근성이 있는 자)로 체계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법상 미공개중요정보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 가 아니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 이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에 시장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특히 시장정보와 관련한 내부자의 범위와 공개의 주체 및 방법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어야

므로 가상자산에 관한 시장정보를 보유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 대량취득자나 대량보유자를 포함하여 매우 정치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법체계를 따를 때 미공개중요정보인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공개의 주체와 공개방법이 확정되어야 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의 범위에 시장정보도 포함될 경우에 대비하여 공개의 주체와 공개방법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 금융감독 요건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4조, 제15조).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제16조).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가상자산법의 제도적 의의와 과제

그렇다고 해서 가상자산법의 구조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부분적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가상자산법에서 추구하는 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②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③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행인의 자격을 포함한 발행규제와 유통규제,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이 갖추어져야 한다.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지급법제와의 관계설정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한계는 2단계 후속입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할 때, 그리고 2단계 입법으로서 최소한 발행규제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
따라 금융당국 및
중앙은행의 역할도
구체화되어야


가상자산법의 제도적
의의는 2단계 입법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

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상자산법의 제도적 의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그 기반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을 승인하는 의미도 가진다. 물론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이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특정한 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대부분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것이다. 법률상 이를 개념요소로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큰증권에 관한 입법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참고한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법의 조문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상자산법 부칙 제2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법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2조).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것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이례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만일 CBDC를 제도화한다면 가상자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취지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지급수단은 가상자산법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현금과 가상자산 사이의 자금이동을 통하여 불법자산을 합법자산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정당한 거래수단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카지노칩도 같은 취지에서 자금세탁방지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요하는 대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최소한 발행규제와 발행공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상자산법의 제정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완결적인 규제를 향한 단초를 여는 의미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법적 승인으로서의 의미

CBDC를 제도화할 경우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으로 해야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요하는 대상’으로 승인

日 3대 금융그룹의 글로벌 전략 변화 및 시사점

백종호 연구위원

일본 3대 금융그룹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을 확대한 결과, '22 회계연도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日 금융그룹은 과거 지점, 사무소 중심의 은행 위주 사업에서 현지법인 및 지분투자를 기반으로 한 현지고객 영업은 물론, IB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최근에는 비효율사업 재편과 함께 디지털/비은행, 인프라/ESG 등으로 지역, 진출방식, 사업분야를 확장해 왔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는 물론, 글로벌 전략 고도화가 필요하다.

■ 일본 3대 금융그룹은 FY22년에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전망도 긍정적

- 日 3대 대형금융그룹(MUFG, SMFG, Mizuho)의 '22회계연도('22.4~'23.3월) 기준 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5%가 증가한 2.5조엔을 기록(9년래 최고 수준)
 - MUFG 순이익은 채권평가손으로 인한 비이자이익 감소(-16.9%) 및 대손비용 확대(+103.6%)로 소폭 감소한 반면, SMFG와 Mizuho는 이자이익 확대(SMFG +12.4%)와 대손비용 감소(Mizuho -62.0%)로 순이익이 각각 14%, 5%씩 증가
-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매각 손실로 인한 비이자이익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 회복에 따른 대출 증가와 해외사업 확대가 호실적의 주요인으로 작용
 - 해외사업은 美 Fed의 긴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금융 대신 은행 차입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대출이 증가하고 이자이익이 개선된 데에 주로 기인
- '23회계연도('23.4~'24.3월)에도 일본내 대출 수요를 기반으로 3대 금융그룹의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며, 3사 합계 순이익은 10% 증가한 2.7조엔으로 전망
 - 다만, 日 3대 금융그룹의 해외 익스포져 확대로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부실대출 및 대손비용 증가 등의 잠재적 위험으로 인한 수익 악화 가능성 존재

■ 일본 3대 금융그룹의 FY22 실적

(단위: 십억엔)

	MUFG		SMFG		Mizuho	
	'22	증감률(YoY)	'22	증감률(YoY)	'22	증감률(YoY)
영업수익	4,503.0	13.6	3,170.2	7.6	2,280.2	1.2
이자수익	2,907.5	42.3	1,717.8	12.4	960.5	-3.3
비이자수익	1,595.5	-16.9	1,452.4	2.4	1,319.7	4.7
판관비	2,908.7	5.9	1,949.2	7.0	1,473.5	5.8
대손비용	674.8	103.6	210.2	-23.3	89.3	-62.0
순이익	1,116.4	-1.3	805.8	14.0	555.5	4.7
ROE	7.0%	-0.8%p	8.0%	0.7%p	9.5%	0.2%p

자료 : 각사 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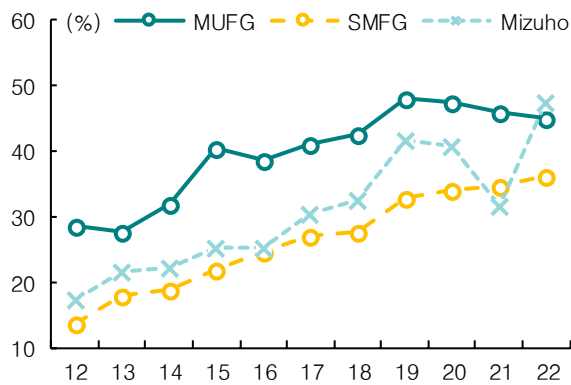
■ 日 3대 금융그룹은 아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대, 글로벌화에 성공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3대 그룹은 수익 다각화를 위해 최근 해외사업을 확대하면서 영업수익 대비 해외수익 비중이 40% 수준으로 10년새 2배 이상 증가
 - 3대 금융그룹의 FY22 기준 해외대출 잔액은 106.9조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해외대출 비중도 30% 이상을 상회(MUFG 41.2%, SMFG 33.2%, Mizuho 32.5%)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등 30여개국 이상에서 해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국의 비중이 높은 편
 - 3개사 모두 아시아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북미 등 아메리카 비중이 35% 내외를, 유럽 등 기타 지역 비중은 20%를 하회하는 등 지역별 비중은 유사

■ 환경변화에 따라 日 3대 금융그룹의 지역, 진출방식, 사업분야는 시기별로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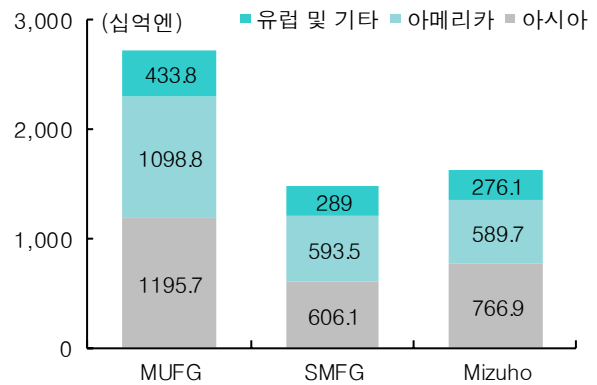
- 90년대 버블 붕괴에 따른 은행 경영환경 악화 및 기업의 해외진출 등으로 해외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 日 금융그룹은 선진국 위주로 지점이나 사무소 형태로 진출
 - 일본기업 및 현지 교민 대상 여수신 영업을 위주로 하는 한편, 일본계 기업의 무역 및 자본 flow의 주요 대상인 선진국 중심으로 영업
-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본내 부실채권 문제로 해외진출이 위축되었으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경 변화로 동남아 중심으로 해외 진출 관심 재조명
 - 일본의 저성장, 저금리가 심화되고 대출시장 성장률이 저하, 잉여 유동성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잉여자본의 운용을 위해 유동성 수출 필요
- 이에 日 금융그룹들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현지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는 물론, 현지법인, 지분투자 등을 포함해 진출방식을 다변화하는 한편, 고객층도 비일본계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현지화를 적극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한 유럽계 은행들의 해외사업 부문을 인수하거나 PF, 신디케이트론, 항공기 금융 등 글로벌 IB부문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

■ 日 3대 금융그룹의 해외 수익 비중 추이



자료 : Bloomberg

■ 日 3대 금융그룹의 FY22 지역별 수익



자료 : 각사,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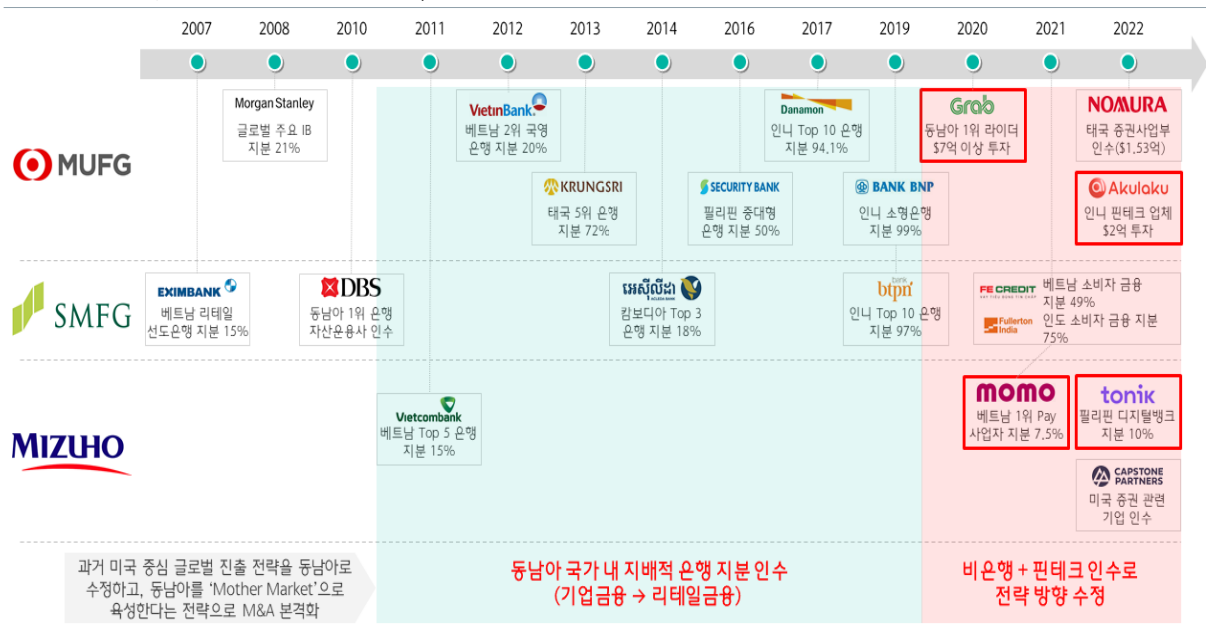
■ 최근 日 금융그룹은 비효율사업 재편 및 핵심사업 강화 등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 선회

- 日 금융그룹은 해외사업 확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업 효율화를 위해 부진한 부문을 매각·철수하거나 사업 연계 실적 등에 따라 재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본격화
 - MUFG는 수익성 악화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 부담으로 美 Union Bank를 80억 달러에 US Bank에 매각('21)하였고, SMFG는 기보유한 베트남 Eximbank 지분 15%를 매각하고 베트남 2위 은행 VP Bank 지분을 인수('23)
- 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딜에 참여하고, 투자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미국내 IB부문에 투자 확대
 - Mizuho는 M&A 자문 특화 부티크 IB인 Greenhill을 인수하였고('23), SMFG는 미국내 또다른 부티크 IB인 Jefferies 지분을 5%→15%까지 확대하여 시너지 강화 계획

■ 또한, 디지털/비은행, 인프라/ESG 등 지속가능금융 중심의 cross-border 전략 가속화

- 동남아 중심의 리테일 영업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금융 기반 진출 전략을 추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은행과 증권 등 그룹내 관계사 연계를 통해 시너지 확보에 중점
 - MUFG는 싱가포르 Grab에 대한 투자/제휴로 특화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태국 자회사 아우타야 은행을 통해 노무라 태국 자회사를 인수, 은행-증권사업 연계 확대
- 또한, 지속가능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ESG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녹색금융 자금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규모 펀드 조성
 - Mizuho는 향후 10년간 150조엔의 지속가능금융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PF, 고탄소배출 업종 내 친환경 전환 기업에 여신 지원 및 투자 확대

■ 日 3대 금융그룹의 시기별 주요 인수, 투자 사례




자료 : 각사, 언론보도

■ 일본 정부도 日 금융그룹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

- 日 금융청은 日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한도 규제는 물론, 업무 범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해외 자회사 인수 및 출자를 지원
 - 日 은행이 해외 금융기관 지분 취득시 출자한도를 완화하고 대규모 M&A시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물론, ITC, 핀테크 등 비금융부문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
 - 또한, 비은행 자회사를 소유한 외국 금융기관을 인수시 매각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금융당국의 승인 후에는 해당 자회사 보유가 허용
- 이외에도 日 정부는 日 금융그룹과 함께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 및 금융지원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하여 직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지원

■ 국내 금융회사의 성공적 해외 진출을 위해 정책 지원은 물론, 글로벌 전략 고도화 필요

- 글로벌 부문이 日 금융그룹의 호실적의 주요인으로 작용함에 주목하여 국내 금융회사도 해외사업 확대로 수익구조 다변화 및 신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
 - 국내은행의 해외 수익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며 국내은행은 기업들의 해외법인 금융지원 목적으로 해외영업을 확장, 이자이익 중심의 사업모델을 고수
- 기존 해외에서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핵심사업 고도화, 비효율사업 재편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 및 트렌드에 따라 선택과 집중 실행 필요
 - 또한, 은행 위주의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계사를 활용, 시너지를 도모하거나 비은행, 핀테크 등 유망사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진출 전략 고도화 검토
- 한편, 금융회사가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수 있도록 해외진출 애로사항 개선 등 정책적 지원과 민·관 차원의 협력 강화가 병행될 필요 

■ 日 3대 금융그룹의 글로벌 전략 변화

	Global 1.0	Global 2.0	Global 3.0
시기	• 80년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2010년대	• 2010년대 ~ 현재
지역	• 선진국 위주 - 일본계 기업의 무역 및 자본 Flow 활용	•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	• 선진/신흥국 시장 망라 - 국내 대비 높은 성장성/수익성 제공 시장
주요 전략	• 고객과의 동반진출 - 해외진출 추진중 국내기업과 관계 심화	• 잉여 유동성의 해외 배치 - 국내 유동성/자본을 신시장으로 수출	• 역량 기반 신시장 진입 및 선택과 집중 - 노하우 보유 입지 활용, 내실화/효율화
진출 방식	• 지점 및 사무소	• 기진출국 현지은행 제휴 및 지분투자	• 해외 은행 M&A 및 핀테크 지분투자
주요 Biz.	• 기업금융 위주 - 일본 기업 및 현지 교민 대상 여수신	• 기업 + 리테일 금융 - 고객군별 बैं킹/파이낸싱 서비스 차별화	• 증권/IB, 비은행 등 관계사 연계 - 디지털 기반 금융을 통한 cross-border 전략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속화

신석영 수석연구원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의 유통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국경 간 결제를 중심으로 2028년 최대 5조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관련 법제화 논의가 최근 급진전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 연계는 회계 처리 등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나, 당분간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연계 시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최근 미국과 홍콩 등 주요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이 구체화^[1]

-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고정(Pegging)된 가상 자산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낮은 송금비용을 장점으로 시장 규모 확대
 -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상대적으로 가치 변동성이 낮아 국경 간 결제(Cross border payment)를 중심으로 꾸준히 시장 규모가 확대 중
 - USDT 등 상위 10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년 12월 275.2억 달러에서 '22년 12월 1,550.0억 달러로 성장을 기록(Statista)
- 일본은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독점 발행을 허가하는 자금결제법을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며, 미국과 홍콩 역시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가속화
 - 미국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CBDC 연계 등의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하였으며('23.04), 이르면 7월 관련 법안의 표결 진행 예정
 - 홍콩 재정사무국 쉐니 하오리안 부국장은 2024년 말 입법을 목표로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지원책도 제시할 예정('23.06)

■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CBDC와 결합되며 5년 후 최대 5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 전망


-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확산시킬 수 있는 주요 유통 수단으로 부상 중이며, 특히 양자의 결합은 국경 간 결제의 혁신을 가져올 전망
 - CBDC는 중앙은행의 도매용 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은 CBDC 유통 역할 담당
- 중국은 CBDC의 일종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주요 도시에 보급하는 등 CBDC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주요국의 CBDC와 스테이블코인 연계도 속도를 낼 전망
 - 투자은행 번스타인(Bernstein)은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CBDC 유통량이 급증하고 연계 시장 규모가 5년 후 최대 5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1] “세계는 지금 ‘스테이블코인’에 주목”, CoinDesk, 2023.06.22

■ 한국은행도 최근 CBDC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법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국내에서의 관련 법제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

- 한국은행은 올해 CBDC 실증사업을 핀테크 등 다양한 업체와 확대 실시하고 내부 관련 조직을 강화하며 CBDC 사업화에 속도를 내는 양상
 - 한국은행은 '22년 하반기 14개 시중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CBDC 실험을 수행했으며, 올해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핀테크기업을 사업에 포함할 방침
 - 또한 내부 CBDC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개 팀 규모였던 CBDC 전담조직을 올 2월 4개 팀 규모의 독립 연구부로 격상(디지털화폐연구부)
-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
 - 한국은행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감시는 한국은행법 체계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

■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 가능성은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나, 당분간 CBDC의 유통 실험은 스테이블코인에 집중되고 국내 금융업의 관련 사업화도 확대될 전망

- CBDC의 유통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간 회계 연동 등의 한계가 지적되며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나, 현재 스테이블코인 이외 수단은 제한적
 - 스테이블코인의 대체 수단으로 예금토큰(CBDC 기반의 은행예금 토큰화)이 부상 중이나, 예금토큰은 CBDC 활성화가 전제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도입 한계
- 단기적으로 한국은행과 금융사 CBDC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연계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의 CBDC 유통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
 - 최근 JP모건은 일본의 SBI 및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협업하여 법정화폐(싱가포르 달러 및 엔화)를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하는 실험을 수행('22.11)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예금토큰이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특성을 갖고 있어 향후 CBDC의 주요 유통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급('23.03) 

■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

국가	법제화 단계	현황
미국	국회 논의	·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2023.04) · 스테이블코인 정의, 발행사 규제, CBDC와의 연계 등을 포함
EU	법안 통과	· 가상자산 법안인 MiCA에 스테이블코인 내용을 포함, EU 의회 통과 완료(2023.04)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등이 포함되었으며, 최근 발행요건 완화 검토(2023.06)
일본	법안 발효	·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중은행에 국한하는 자금결제법 시행 중(2023.06~)
홍콩	법안 검토	· 2024년 말 입법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와 지원방안 검토(2023.06)
한국	-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감독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보고서 발간(2022.12)

자료 : 언론보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한국은행, 2022.12.05

아시아 대형 금융사, 인도네시아 금융 비즈니스 확장

송형은 연구원

MUFG 은행과 ADMF가 인니 멀티파이낸스사 Mandala를 공동인수하며 인도네시아 오토론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적극적인 M&A 및 투자를 통해 진입한 글로벌 은행들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세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규제 영향으로 은행 및 비은행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고 진출 및 확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MUFG 은행과 PT Adira Dinamika Multifinance Tbk(ADMF)가 인도네시아 오토론 Mandala Multifinance Tbk(MFIN)사를 약 660억엔(약 6천억원)에 공동 인수 발표^[1]
 - MUFG 은행과 ADMF는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서 오토론(이륜차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MFIN의 주식 80.6%를 약 660억엔에 공동 인수하기로 협의
 - 이번 인수로 MUFG은행은 MFIN의 주식 70.6%를 소유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다나몬 은행의 자회사로 오토론 사업을 다루는 ADMF사가 10% 취득
 - 이는 자산규모 6.6조 루피아의 MFIN사 인수를 통하여 비즈니스를 확대(MUFG)하고 인니 오토론 시장의 입지를 강화(ADMF)하려는 양사의 전략으로 분석
 - 인도네시아 멀티파이낸스 시장에서 5조 루피아 이상 규모를 가진 중대형 24개 사가 M/S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코로나에도 견고한 실적을 달성

-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은 MUFG 외에도 대형 글로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인수 및 투자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 중
 - 싱가포르의 UOB는 동남아시아 4곳의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을 2022년 37억달러에 인수했으며 OCBC도 인도네시아 기업 인수를 모색 중이라고 발표^[2]
 - 日 미즈호도 지난 3월 BNPL 기업 크레디보홀딩스에 우선주 인수형태로 10%(170억엔)를 출자하며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임^[3]
 - 크레디보는 확보한 자금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बैं킹 시장을 확대할 계획

[1] "三菱UFJFGが600億円でインドネシアのノンバンクを買収", Kanzai, 2023.6.30

[2] "Mitsubishi UFJ to buy Indonesia auto loan firm Mandala for \$467 million", Reuters, 2023.6.26

[3] "Mizuho to invest \$130m in Indonesian buy now, pay later service", Nikkei, 2023.03.23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경제 및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편이어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시장의 확대가 기대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경제 기반으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경제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 유입 또한 지속되고 있는 추세
 -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은 2022년 5.3%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PPP)는 2022년 12.4천달러에서 2023년 12.9천달러를 넘길 전망세
 - 지난해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FDI)규모는 456억 달러로 2021년보다 44% 증가
-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2억 7500만명)으로 젊은 층 인구가 많고 모바일 및 디지털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디지털/테크 수용도가 높음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는 존재하나 아세안 국가들 중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편이며, 특히 캐피탈/핀테크는 은행 대비 유연한 편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있을지 살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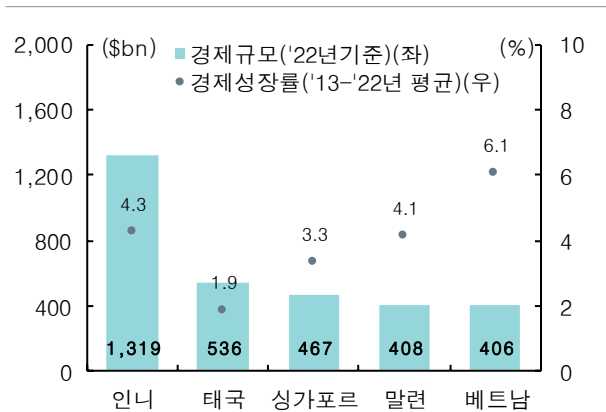
- 이미 국내 금융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업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살펴볼 필요
- 최근 금융위원회는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 언급
- 이에 해외 금융사들의 행보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업권별로 각 사의 역량과 강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및 해외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성장 기회를 포착할 필요
 -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인니의 캐피탈과 핀테크 분야에 주목하여 중대형 멀티파이낸스사 인수와 핀테크 제휴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을 검토할 필요⁴⁾

■ 해외 주요 금융기관 인수 및 투자 동향

기업명	인수회사	날짜	금액
Citi 태국/말레이시아 /인니/베트남 소매금융 부문	UOB	'22.01 (합의)	37억 달러 (50억 싱가포르달러)
네덜란드 Home Credit 필리핀/인니 사업부	MUFG	'22.11	6억 2100만 달러 (6억 유로)
인니 BNPL사 크레디보(Kredivo)	Mizuho	'23.03	1억 2500만 달러 (170억 엔)
인니 멀티파이낸스 Mandala사(MFIN)	MUFG	'23.06	4억 6700만 달러 (7조 루피아)

자료 : Reuters

■ 아세안 주요국 경제규모 및 성장률 비교



자료 : IMF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2023.04

금리: 물가 둔화세 뚜렷해지며 긴축 경계감 완화

윤 석 진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美 고용지표 예상치 상회로 상승하다 CPI 상승률 둔화 흐름이 확인되며 하락 전환했다. 국내 금리는 韓 소비자물가가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한 가운데, 금통위의 금리 동결 및 매파적 스탠스 완화 등으로 하락했다. 7월 금통위는 향후 물가 재상승 및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가 다소 높아짐에 따라 매파적 색채가 완화되었다. 국내외 금리는 최근 상승세를 견인했던 주요국 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하방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美 고용지표 예상치 상회로 상승하다 물가상승률 둔화로 하락 전환

- 美 6월 ADP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긴축 우려가 강화된 가운데, BLS 고용보고서 내 실업률 하락·시간당 평균 임금 예상치 상회로 경계감 확대
 - 美 ADP 고용증감(만 명) : 4월 29.6 → 5월 26.7 → 6월 49.7 (예상 22.5)
 - 美 시간당 평균임금(% YoY) : 4월 4.4 → 5월 4.3 → 6월 4.4 (예상 4.2)
- 이후 발표된 美 CPI 및 근원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을 하회하며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PPI 상승률 또한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물가 안정 기대감 강화
 - 美 CPI/근원CPI(% YoY) : 4월 4.9/5.5 → 5월 4.0/5.3 → 6월 3.0/4.8 (예상 3.1/5.0)
- 최근 美 성장률 및 고용 서프라이즈·매파적 6월 FOMC 의사록 등에 따른 긴축 우려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글로벌 금리는 물가 위험 완화를 확인하며 하락 전환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6.29일 4.87/3.85 → 7.7일 4.96/4.07 → 13일 4.65/3.77


■ 국내금리는 소비자물가 2%대 진입 및 금통위의 동결·매파적 스탠스 완화 등으로 하락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하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진 가운데, 근원CPI도 둔화세를 나타내며 근원물가 하방경직성 우려 감소
 - 韓 CPI/근원CPI(% YoY) : 3월 4.2/4.0 → 4월 3.7/4.0 → 5월 3.3/3.9 → 6월 2.7/3.5
- 7월 금통위는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총재의 기자회견이 이전 대비 다소 완화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금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 대외發 추가 긴축 우려에 글로벌 금리와 동반상승하던 국내 시장금리는 韓·美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 및 금통위의 동결 및 매파적 색채 완화 등으로 반락
 - 국고 3/10년 금리(%) : 6.30일 3.66/3.68 → 7.7일 3.74/3.76 → 14일 오전 3.59/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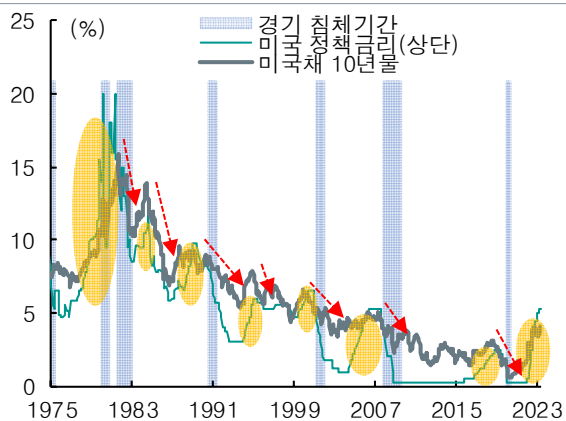
■ 금통위, 향후 물가 재상승 전망 및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 7월 금통위는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동결(3.5%, 만장일치)
- 통화정책방향문 내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가계부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추가하고,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일부 비은행부문의 위험이 증대됐음을 명시
 - 최근 크게 증가한 주담대 규모·새마을금고 우려 등을 반영해 금융안정 경계감 확대
- 총재는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외금리차 및 가계부채 관련해 즉각적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발언하며 매파 스탠스 완화
-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추가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화정책 여건 감안 시 향후 韓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3.50%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국내외 시장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경계감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하방압력 우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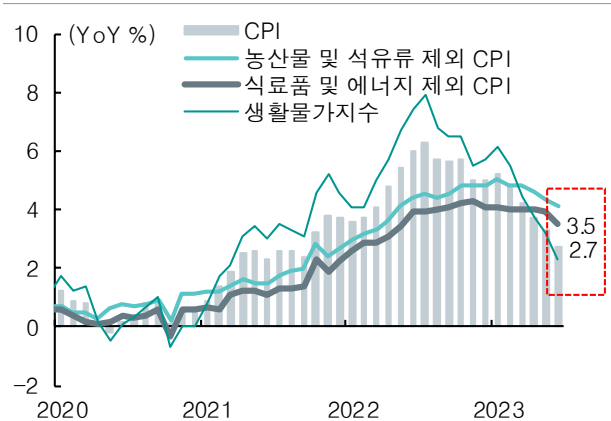
- 美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연준의 실질 정책금리(명목 정책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함에 따라 금리 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
- 과거 美 금리 인상기 대다수가 인상 중단 후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졌으며 이후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점 등을 감안 시, 통화긴축 여파 및 美 은행권 대출태도 강화에 따른 신용위축의 실물경제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며 경기모멘텀 약화 예상
 - 과거 미국채금리는 연준 인상 사이클 종료 이후 경기 둔화를 반영해 하락세 본격화
-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세를 견인했던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 경계감이 완화되고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는 하방압력 우세할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45%~3.65%, 3.55~3.75% 범위로 전망 

■ 美 기준금리 인상기 이후 경기 및 미국채 금리 추이



주 : 원형 음영 표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
 자료 : Bloomberg

■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외환: 연준 긴축 마무리 기대 속 약달러 재개

오 현 희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 속 FOMC 의사록에서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 등으로 긴축 경계감이 강화되며 1,300원을 상회하는 흐름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미국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물가 둔화 기대가 높아지자 1,200원대로 반락하였고,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둔화되면서 1,260원대까지 하락 폭을 확대하였다.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확인되면서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달러화 약세 흐름에 연동된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 예상된다.

■ [원/달러 환율] 미국 물가둔화 확인에 따른 달러화 급락으로 1,200원대 재진입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와 FOMC 의사록 공개로 긴축 경계감이 강화된 가운데 中 경제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 등으로 1,300원대에서 등락
- 하지만, 미국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물가 둔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반락하였으며, 예상치를 하회하는 물가지수가 발표되자 하락 폭 확대
 - 미국 물가 지수 발표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260원까지 하락(7.14일)
- 수급측면에서는 차익실현을 위한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 진정에 따른 순매수 전환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6월 1.6조원 순매도 → 7.1~13일 0.9조원 순매수)

■ [국제 환율]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도 고용지표와 물가 둔화로 달러화 급락

- 달러화는 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인상 의지가 확인되며 강세를 보였으나, 6월 물가지표 둔화 영향으로 100을 하향 돌파(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
 - 6월 美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예상치를 하회하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따른 긴축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달러화 지수는 99.7까지 하락(7.14일)
- 유로화는 유로존과 독일의 경기지표 부진에 따른 침체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연준의 긴축 행보 약화 기대 속 상대적인 ECB 긴축의지가 부각되며 반등
 - 독일의 무역흑자 축소, 유로존과 독일의 경기기대지수 하락 등으로 침체 우려 부각
- 엔화는 日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위험 회피 심리 등에 강세를 보이며 140엔/달러를 하향돌파한 가운데 美 CPI 발표 이후 마·일간 금리차 축소로 강세 폭 확대
- 위안화는 中 디플레이션 우려와 예상치를 하회한 서비스업 PMI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으나, 美 물가둔화 속 미중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강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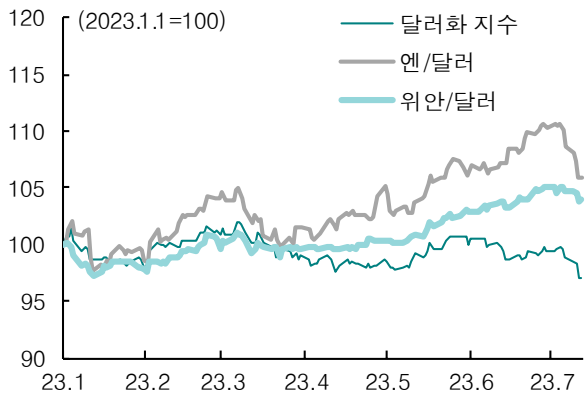
■ 엔화와 위안화 동반 약세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

- 최근 달러화 강세 압력 완화에도 엔화와 위안화는 지난해 저점 수준까지 하락
-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연준 긴축 경계와 ECB 추가 금리인상 전망 속 BOJ와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행보에 따른 정책 차별화
 - BOJ는 신임총재 부임 이후로도 정책 변경이 부재한 모습이고, 인민은행은 기준물, 역레포 금리, 1년물 MLF 금리 등을 잇따라 인하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
- 하반기로 가면서 연준 긴축 경계감이 약화되면 이들 통화의 약세 압력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여건과 대외 환경 등을 고려시 회복 속도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
 - 엔화의 경우 日 경제가 선진국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자금유입도 지속되고 있어 연준 긴축 경계 약화 및 BOJ 정책 전환 시 강세 전환 예상
 - 반면, 위안화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약화 속 부정적 경제전망, 미중간 갈등 지속 등으로 통화정책 차별화 이슈가 약화되더라도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
- 원화는 위안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엔화와 동조화도 심화되고 있어, 이들 통화의 흐름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

■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달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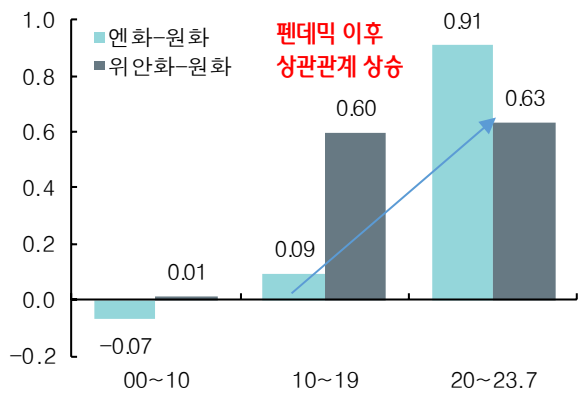
- 美 물가지표 둔화로 7월 FOMC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가 높아지고 위험선호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가능성
 - 매파적 성향의 제임스 블러드 위원 사임(8월) 소식에 통화긴축 경계감 더욱 완화
- 단, 단기 환율 급락에 대한 되돌림 속 7.1~10일 수출지표 부진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전환 우려 등은 하락 폭을 제한하며 2주간 1,250~1,320원에서 등락 예상 **우**

■ 달러화지수, 엔/달러, 위안/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 엔화와 엔화 및 위안화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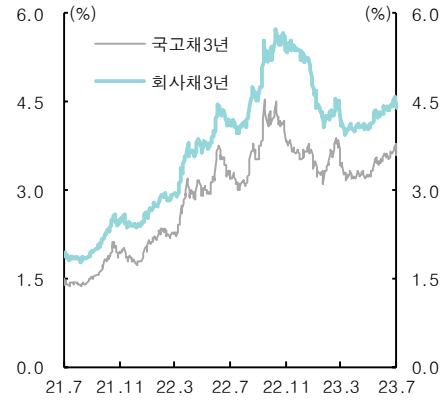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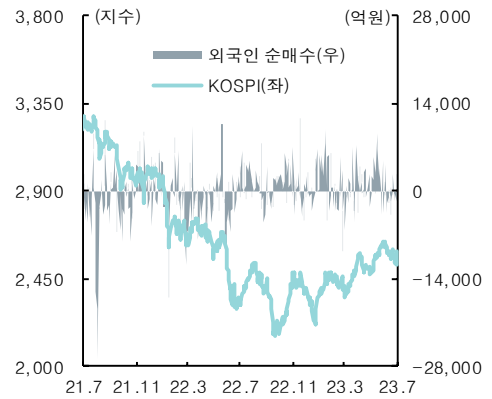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6월말	3.77	3.75	3.87	4.47	3.66	3.66
7월 7일	3.59	3.75	3.88	4.53	3.74	3.73
7월 10일	3.58	3.75	3.92	4.59	3.80	3.81
7월 11일	3.56	3.75	3.87	4.50	3.70	3.72
7월 12일	3.53	3.75	3.87	4.51	3.70	3.72
7월 13일	3.51	3.75	3.82	4.41	3.60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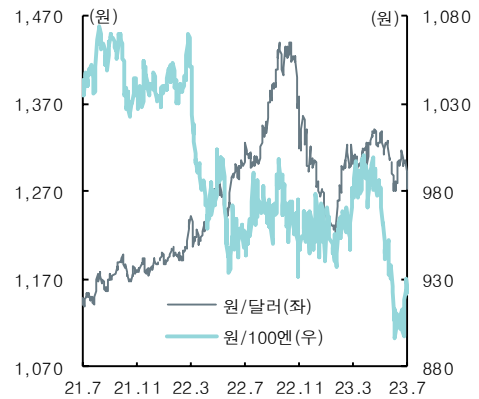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6월말	2,564.3	82,091	511	-1,784
7월 7일	2,526.7	103,674	613	-451
7월 10일	2,520.7	96,987	562	-1,557
7월 11일	2,562.5	105,965	594	2,687
7월 12일	2,574.7	132,299	697	2,188
7월 13일	2,591.2	132,580	586	2,173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6월말	1,317.7	912.9	181.7	1,437.3
7월 7일	1,305.0	918.2	180.7	1,431.3
7월 10일	1,306.5	924.3	180.6	1,437.3
7월 11일	1,293.7	921.4	179.4	1,424.1
7월 12일	1,288.7	930.5	179.8	1,434.3
7월 13일	1,274.0	922.8	178.1	1,4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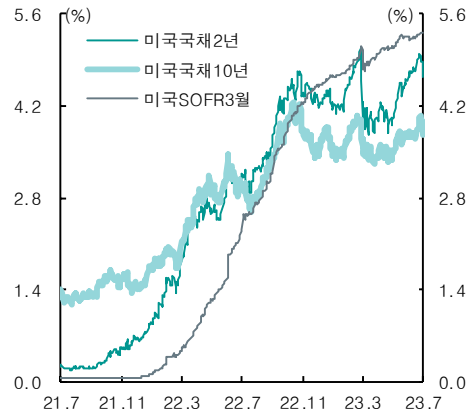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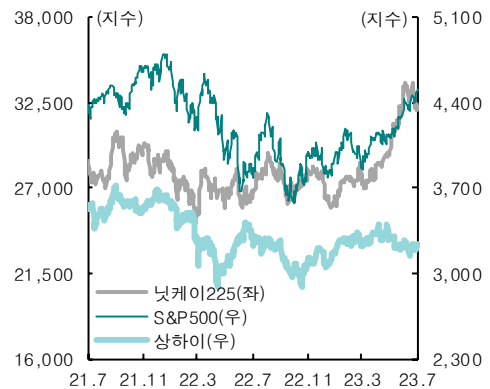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09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6월말	5.08	5.27	4.90	3.84	0.40	2.39
7월 7일	5.08	5.30	4.95	4.06	0.43	2.64
7월 10일	5.07	5.30	4.86	3.99	0.46	2.64
7월 11일	5.08	5.30	4.87	3.97	0.46	2.65
7월 12일	5.08	5.31	4.75	3.86	0.47	2.54
7월 13일	-	5.31	4.63	3.76	0.48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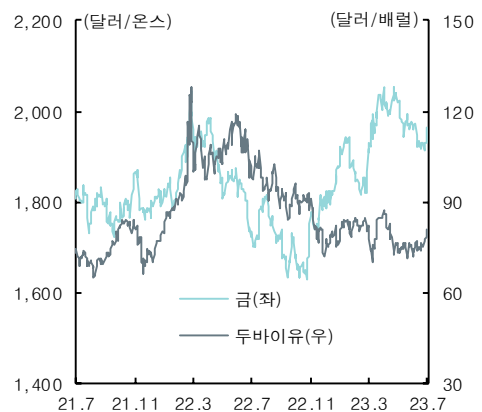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4,766.2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6월말	4,450.4	33,189.0	3,202.1	4,399.1
7월 7일	4,399.0	32,388.4	3,196.6	4,236.6
7월 10일	4,409.5	32,189.7	3,203.7	4,256.5
7월 11일	4,439.3	32,203.6	3,221.4	4,286.6
7월 12일	4,472.2	31,943.9	3,196.1	4,360.5
7월 13일	4,510.0	32,419.3	3,236.5	4,391.8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6월말	144.26	1.091	76.6	1,929.4
7월 7일	142.11	1.097	77.9	1,932.5
7월 10일	141.32	1.100	78.3	1,931.0
7월 11일	140.36	1.101	78.8	1,937.1
7월 12일	138.46	1.113	79.9	1,961.7
7월 13일	138.04	1.123	81.1	1,963.8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15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7월 14일 인쇄

2023년 7월 17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15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